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) ①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,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,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,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,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,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9년 12월 3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
교육부장관

유은혜

●법률 제16674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3항 단서 중 “초·중등학교의”를 “초·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,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라 중임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국립 또는 공립인 특수학교의 교장과 교장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인 특수학교의 장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2월 3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 유 은 혜
교육부장관

●법률 제16675호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며,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2월 3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 유 은 혜
교육부장관

●법률 제16676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